

서울특별시 심리지원 서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76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3개소(동남권, 동북권, 서남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 나.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형평성 기회제공을 위해 서북센터를 추가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서울특별시 심리지원 서북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 필요성
 - 서울시민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차원의 심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일반시민의 심리지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건강형평성 기회 제공을 위한 서북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해당 분야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공적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동료상담가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유형: 예산지원형(사무형 위탁)
- 수탁기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
- 소재지: 서북권(마포, 용산, 은평, 서대문, 종로, 중구)

※ 기존 서울심리지원센터 3개 권역(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구 분	자 치 구
동북권	강북,노원, <u>도봉</u> ,동대문,성북,중랑구
서남권	강서,구로,금천,관악,동작,영등포, <u>양천</u> 구
동남권	강남,강동,광진,서초,성동, <u>송파</u> 구
서북권	마포,용산,은평,서대문,종로,중구(예정)



○ 규 모

- 인력구성: 6명 [센터장 1(비상근), 팀장 1, 팀원 4]
- 시설규모: 면적 165m²이상

구 분	총계	사무실	상담검사실	대기실	교육실
설치수(실)	8	1	5	1	1
면적	165m ²	14m ²	15m ² ×5 = 75m ²	36m ²	40m ²
시설기능		직원근무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힐링제공	집단교육 프로그램

마. 민간위탁기간: 3년 이내(2020.위탁일 ~ 2022.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소요예산: 230,000천원(2020년 예산 편성 중)

- 민간위탁금 230백만원(인건비 115, 사업비 80, 운영비 35)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조직담당관 2019.7.1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 ② 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심리지원 서북센터 운영 민간위탁 신규 공모계획수립
(보건의료정책과 2019.6.11.)

※ 작성자: 보건의료정책과 정신건강TF팀 민영란 (☎ 2133 - 7549)